

# 예 산 총 칙

201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71,810,676	8,154,320
일반회계	250,710,527	7,521,316
특별회계	21,100,149	633,004
기타특별회계	21,100,149	633,00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74,798	20,244
주택사업특별회계	533,000	15,990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111,892	33,35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52,000	25,56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596,312	47,889
주차장특별회계	336,965	10,109
수질개선특별회계	15,535,182	466,05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00,000	9,000
기반시설특별회계	160,000	4,8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125,184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5,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